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의원발의 「축산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

-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(2023.11.14.)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,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`23.11.2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제출 양식 >

(담당자, 부서명, 연락처)

개정안	수정안	검토의견

- 아울러,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: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갑 의원 등 10인)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(19부), 중앙행정기관(19청), 중앙행정기관(2원), 중앙행정기관(4처), 중앙행정기관(7위원회),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, 지자체 축산부서, 축산단체



주무관 김자은 사무관 지민정 축산정책과장 정경석 전결 2023. 11. 16.

협조자

시행 축산정책과-4964 (2023. 11. 16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309호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392 팩스번호 044-868-9025 / kje5799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